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43,589,782	13,307,693
일반회계	408,133,712	12,244,011
특별회계	35,456,070	1,063,682
기타특별회계	35,456,070	1,063,682
수질개선 특별회계	15,011,051	450,332
주택사업 특별회계	4,139,158	124,175
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	783,499	23,505
자활기금 특별회계	1,886,105	56,583
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	10,913,598	327,408
주차장관리 특별회계	1,097,602	32,928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	450,956	13,529
기반시설 특별회계	33,084	993
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1,141,017	34,231

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및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 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607,47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,713,499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